#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580

발의연월일: 2025. 1. 16.

발 의 자:이인선·조지연·박성훈

김위상 • 박상웅 • 정동만

박덕흠 • 조정훈 • 박충권

이양수 · 강명구 · 김기웅

이달희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원 용역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외에는 입찰기관이 없어 실질적인 경쟁입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때문에 「국가계약법」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관련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경쟁입찰 을 위한 공고 등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재정법」 제8조의2 예비타당성 업무와 같이 기관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이들 기관이 「국가재정법」 상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8조의2제1항제1호 신설등).

법률 제 호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및 그 수립과 관련 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제38조의2 중 "제8조의2제1항제1호"를 "제8조의2제1항제1호의2"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8조의2(전문적인 조사・연구기 제8조의2(전문적인 조사・연구기 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 관의 지정 등) ① -----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_ 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 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및 조사 · 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 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 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수립 및 그 수립 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 • 연 구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1. (생략) 2. ~ 8. (생략) 2.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획재정부 관련 자료의 공개) ------

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제8조의2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예측자료 등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u>제8조의2제1항</u>
제1호의2	